

풍수해 「(대풍·호우, 대설)」 감염병 대응 매뉴얼

- 2022년판 -



질병관리청

풍수해 감염병 대응 매뉴얼 발간 목적

제정 2017. 8. 3.

개정 2018. 7.10.

개정 2019.12.31.

개정 2021. 7. 2.

개정 2022.12. 1.

-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풍수해(태풍·호우, 대설) 발생 시, 기반시설 파손 등으로 위생환경이 취약해지고,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 밀집 생활로 인한 감염병 발생 가능성 증가
- 풍수해 시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 협조체계 구축, 위기경보 발령 시 수준별 비상근무체계 운영 등 효과적 관리대책을 수립·점검·시행하여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 유지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서의 예방 행동요령, 안전한 물과 음식 섭취 방법, 올바른 손씻기 등의 안내를 통해 감염병 발생 최소화

※ 풍수해 감염병 발생 시 동 매뉴얼을 기본으로 하여 지역 특성 및 재난 발생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함

풍수해 감염병 대비·대응 관련 담당 부서 업무 및 연락처

부서	업무	연락처 (043-719-)
운영지원과	• 풍수해 대비·대응 총괄	7082
위기대응총괄과	• 풍수해 감염병 대비·대응 총괄	9082
종합상황실	• 24시간 종합상황실 및 1339 콜센터 운영	7878, 7979 7789, 7790
비축물자관리과	• 재해대비 감염병예방물품 지원	9163
감염병정책총괄과	• 지자체 협력 및 현장 지원을 위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관리	7116
감염병관리과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제2급 감염병, 제3급 감염병(비브리오 패혈증), 제4급감염병(장관감염증)) 발생 대비 및 대응 • 호흡기감염병 및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발생 대비 및 대응 • 안과감염병 발생 대비 및 대응	7152, 7153 7151, 7143, 7147
예방접종관리과 및 소관 질병담당부서	• 임시예방접종 대응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 모기매개감염병(말라리아, 일본뇌염) 대비 및 대응 • 렙토스피라증 대비 및 대응	7174, 7175, 7176
역학조사 분석담당관	• 지자체 및 질병대응센터 역학조사 지원	7952, 7973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 국가 감염병 진단검사 체계 총괄	7849, 7846
세균분석과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세균) 실험실 검사 및 병원체 감시 • 렙토스피라증 실험실 검사 • 해당 감염병병원체(세균)에 대한 병원체 특성 규명 등	8115, 8913, 8113
바이러스분석과	•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바이러스) 실험실 검사 및 병원체 감시 • 바이러스성 모기매개감염병 실험실 검사 및 감시 • 해당 감염병(바이러스) 병원체 특성 규명 등	8192, 8193
매개체분석과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원충) 실험실 검사 • 해당 감염병병원체(원충)에 대한 병원체 특성 규명 등	8525
대변인	• 풍수해 감염병 안내 사항 홍보 및 배포	7786

2022 풍수해 감염병 대응 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목 차	개 정 사 항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 권역별질병대응센터 역할 추가, 시·도 및 시·군·구 방역대책반 탄력적 운영
감염병 정보 현행화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호흡기 감염병 등 감염병별 발생 현황 및 주요 정보 수정·보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감염병 관리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감염병 일일감시현황 보고 서식 수정

목 차

Contents

PART I . 일반사항

1. 목적	2
2. 기본방향	2
3. 적용범위	2
4. 관련 법규 및 지침	3

PART II . 재난유형 및 위기경보

1. 재난유형	6
가. 태풍 및 호우	6
나. 대설	6
2. 전개양상	6
가. 태풍 단계별 구역 및 상황 전개에 따른 대응	6
나. 호우 및 대설	7
3. 위기경보	8
가. 위기경보 수준	8
나. 위기경보 절차	9

2022년도 「풍수해(태풍·호우, 대설)」 감염병 대응 매뉴얼

PART Ⅲ. 위기관리 체계

1. 종합체계도	12
2. 위기관리 대응체계	13
가. 관심 - 주의 단계	13
나. 경계 단계	13
다. 심각 단계	14
라. 신종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아재민 발생 시	15

PART Ⅳ.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태풍·호우, 대설)

1. 예방 단계(위기 발생 이전)	18
가. 중점 추진사항	18
나. 세부 활용내용	18
다. 풍수해 감염병 예방사업	18
라. 풍수해 감염병 대비 예방수칙 안내	23
2. 위기대응 단계(위기경보 발령)	27
① 위기경보 수준 - 관심·주의	27
가. 상황	27
나. 조치사항	27
다. 기관별 임무 및 역할	28
② 위기경보 수준 - 경계	29
가. 상황	29
나. 조치사항	29
다. 기관별 임무 및 역할	31
③ 위기경보 수준 - 심각	32
가. 상황	32
나. 조치사항	32
다. 기관별 임무 및 역할	34

PART V.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감염병 관리

1. 임시주거시설 설치 전 확인사항	38
가. 임시주거시설 설치 시 환경점검	38
나. 감염병 환자 발생 대응 점검 사항	39
다. 방역물품 및 홍보물품	39
2. 임시주거시설 설치에 따른 감염병 감시	40
가. 감염병 관련 증상 일일감시체계 운영	40
나. 임시주거시설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40
다. 감염병 (의심)환자 관리	40
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 소화기 및 호흡기 감염관리	41
마. 임시예방접종(필요시)	43
바. 방역 및 소독	43
붙임 1.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점검표	44
붙임 2.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자원 목록	45
붙임 3. 개인위생수칙 및 감염병 예방 홍보물	47
붙임 4.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입소 서식(예시)	54
붙임 5.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감염병 감시 정기 선별 보고(예시)	55
붙임 6.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감염병 일일감시현황 보고(예시)	56
붙임 7.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감염병 의심증상 수동감시 안내문(예시)	58
붙임 8.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 임시 격리실 이용 안내문(예시)	59
붙임 9. 임시주거시설 모기 방제를 위한 방역 소독 실시 안내문(예시)	60
붙임 10.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임시주거시설 운영 전 체크리스트	61

2022년도 「풍수해(태풍 · 호우, 대설)」 감염병 대응 매뉴얼

PART VI. 풍수해 감염병 관련 Q&A

PART VII. 부록

1. 풍수해 감염병 발생 현황	68
2. 풍수해 관련 감염병 정보	69
3. 풍수해 감염병 발생 대비 예방관리 점검사항	77
4. 풍수해 발생 후 조치사항(서식)	78
5. 풍수해 발생 후 감염병 발생 관련 일일보고(서식)	78
6. 안전한 물 사용하기	79
7. 안전한 음식 먹기	80
8. 올바른 손씻기 방법	81

Part I

일반사항

1. 목적

2. 기본방향

3. 적용범위

4. 관련 법규 및 지침

Part I

일반사항

1 목적

- 태풍·호우·대설 등 재난발생 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중심의 감염병 모니터링,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위생 강화, 예방수칙 전파 등의 활동을 통해 감염병 발생 및 전파, 확산 최소화

2 기본방향

- 풍수해 감염병 발생 대비 사전 점검 등 예방 활동 강화
- 풍수해 감염병 발생 시 조기인지 및 신속한 대응
- 풍수해 감염병 관련 관리 및 예방을 위한 홍보

3 적용범위

- 풍수해 발생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정감염병(의심) 및 비법정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 상황에 적용

가. 법정 감염병

(1)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E형간염, 비브리오패혈증 등

(2) 호흡기 감염병

- 결핵, 인플루엔자, 홍역 등

(3) 매개체 감염병

- 말라리아, 일본뇌염, 렘토스피라증 등

(4) 창상 감염병

- 파상풍 등

(5) 장관감염증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등

나. 비법정 감염병

(1) 안과 감염병

- 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 등

(2) 기타 감염질환

- 옴, 머릿니 등

4 관련 법규 및 지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및 「풍수해(태풍·호우,대설)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감염병별 관리지침
 - 2022년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
 - 2022년도 말라리아 관리지침
 - 2022년도 진드기·설치류 매개 감염병 관리지침
 - 2022년도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관리지침
 - 2018년도 안과 감염병 관리지침
 - 2018년도 옴·머릿니 예방 및 관리지침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임시주거시설, 지진대피장소 등에 관한 운영지침

Part II

재난유형 및 위기경보

1. 재난유형

2. 전개양상

3. 위기경보

Part II

재난유형 및 위기경보

1 재난유형

가. 태풍 및 호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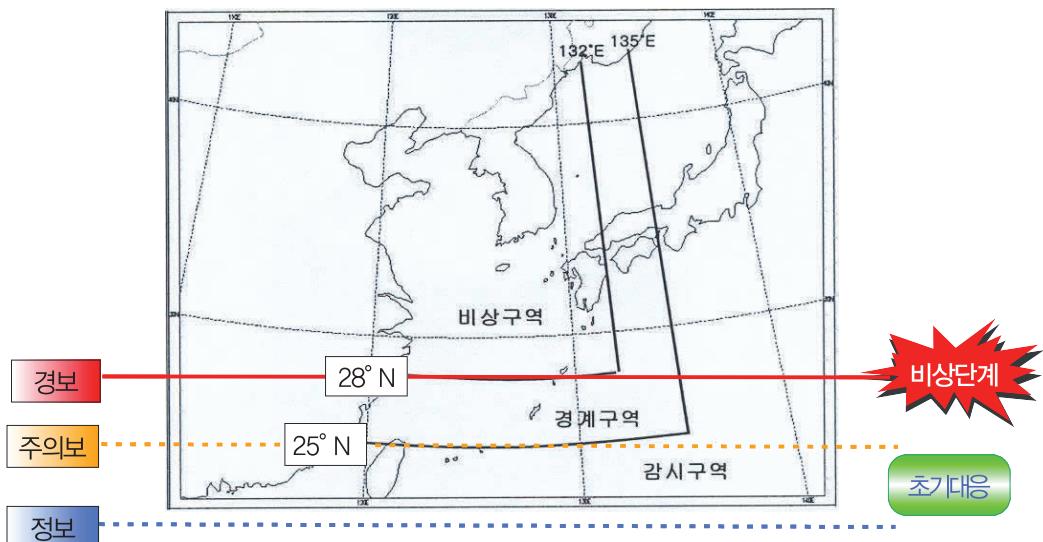
- 침수, 산사태, 풍랑, 강풍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이재민 발생
- 소속기관 소관시설 침수 또는 파손

나. 대설

- 눈사태, 건물 파손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이재민 발생
- 대설로 인한 고립으로 동상 등 한랭질환 발생
- 소속기관 소관시설 파손

2 전개양상

가. 태풍 단계별 구역 및 상황 전개에 따른 대응



기상상황	태풍위치	태풍구역
태풍정보	~25.0° N, 135.0° E~	감시구역
태풍주의보	25.0 N, 135.0 E	경계구역
태풍경보	28.0 N, 132.0 E	비상구역
태풍통과	동해 진출	-

나. 호우 및 대설

- 태풍과 달리 호우 및 대설은 전국적 또는 국지적으로 발생/소멸되는 전개양상을 가지고 있어 기상특보 발표기준(주의보/경보)을 통해 재난전개양상을 주시하여 대응

▶ 기상특보 정의

종 류	주 의 보	경 보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폭풍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3 위기경보

가. 위기경보 수준

구 분		판 단 기 준	질병관리청 감염병 대응 활동
관심 (Blue)	태풍 · 호우	- 태풍 빈발 시기 -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발생 - 호우 빈발시기	- 징후 감시활동 - 감염병 발생 대비·대응 점검
	대설	- 대설 빈발 시기 -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대설의 발생	
주의 (Yellow)	태풍 · 호우	- 태풍 예비특보 또는 태풍주의보가 발표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호우 예비특보 또는 호우주의보가 발표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대설	대설 예비특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고 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경계 (Orange)	태풍 · 호우	-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징후 감시활동 - 감염병 발생 대비·대응 계획 수립 - 협조체제 가동 - 초기대응반 가동 (필요시)
	대설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심각 (Red)	태풍 · 호우	-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 징후 감시활동 - 감염병 발생 대응·비상대책반 가동 (필요시)
	대설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 태풍·호우재난·대설재난 위기경보는 상황에 따라 순차에 관계없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발령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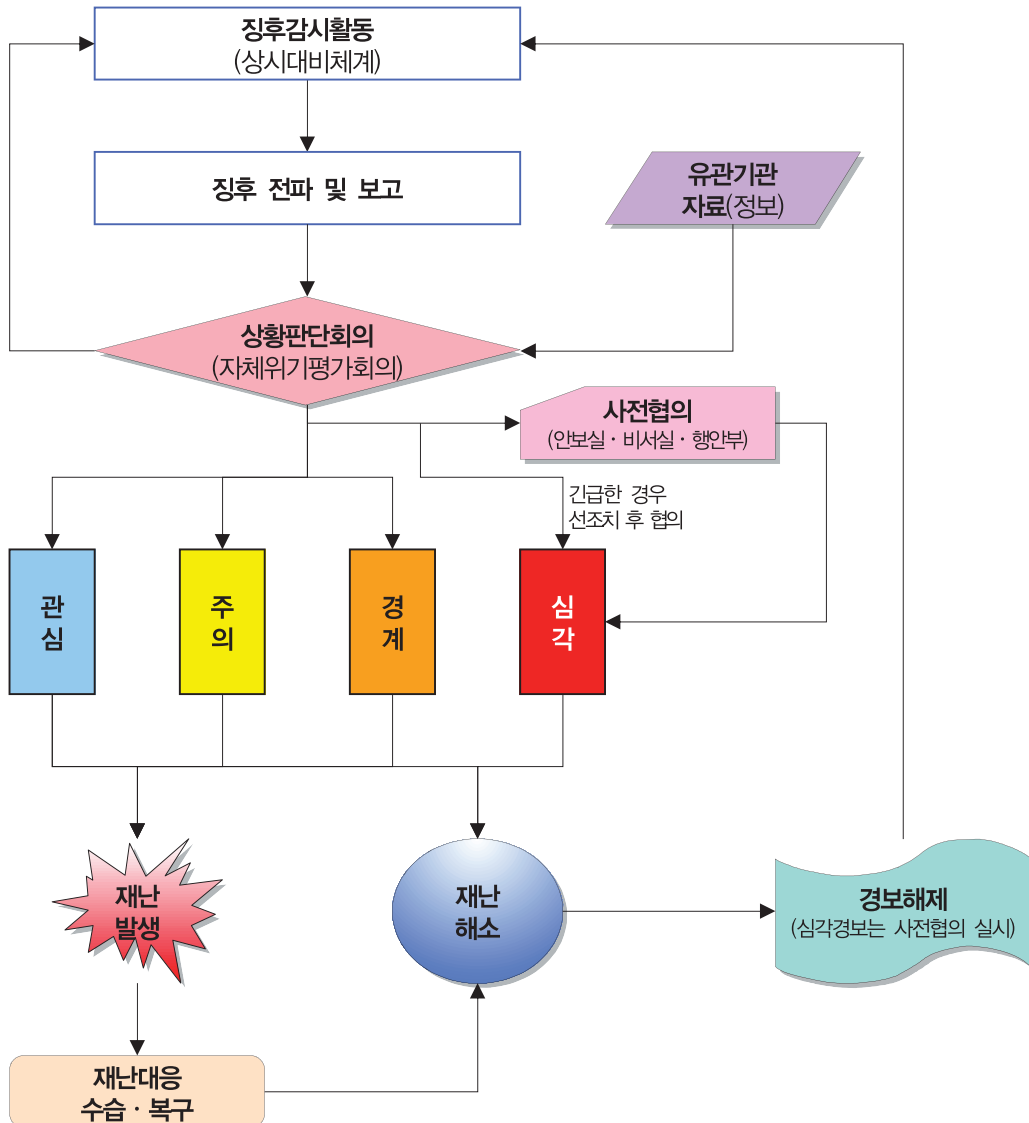
※ 단, 위 발령기준은 재난에 대한 경보 발령을 위한 기준제시이며, 실제 경보발령은 상황의 전개속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를 통해 결정함

나. 위기경보 절차

- 풍수해(태풍·호우, 대설) 재난 위기경보를 행정안전부* 수신받아 내부 보고하고, 소속기관에 전파

* 위기경보 발령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체계〉



* 「풍수해(태풍·호우, 대설)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름

Part III

위기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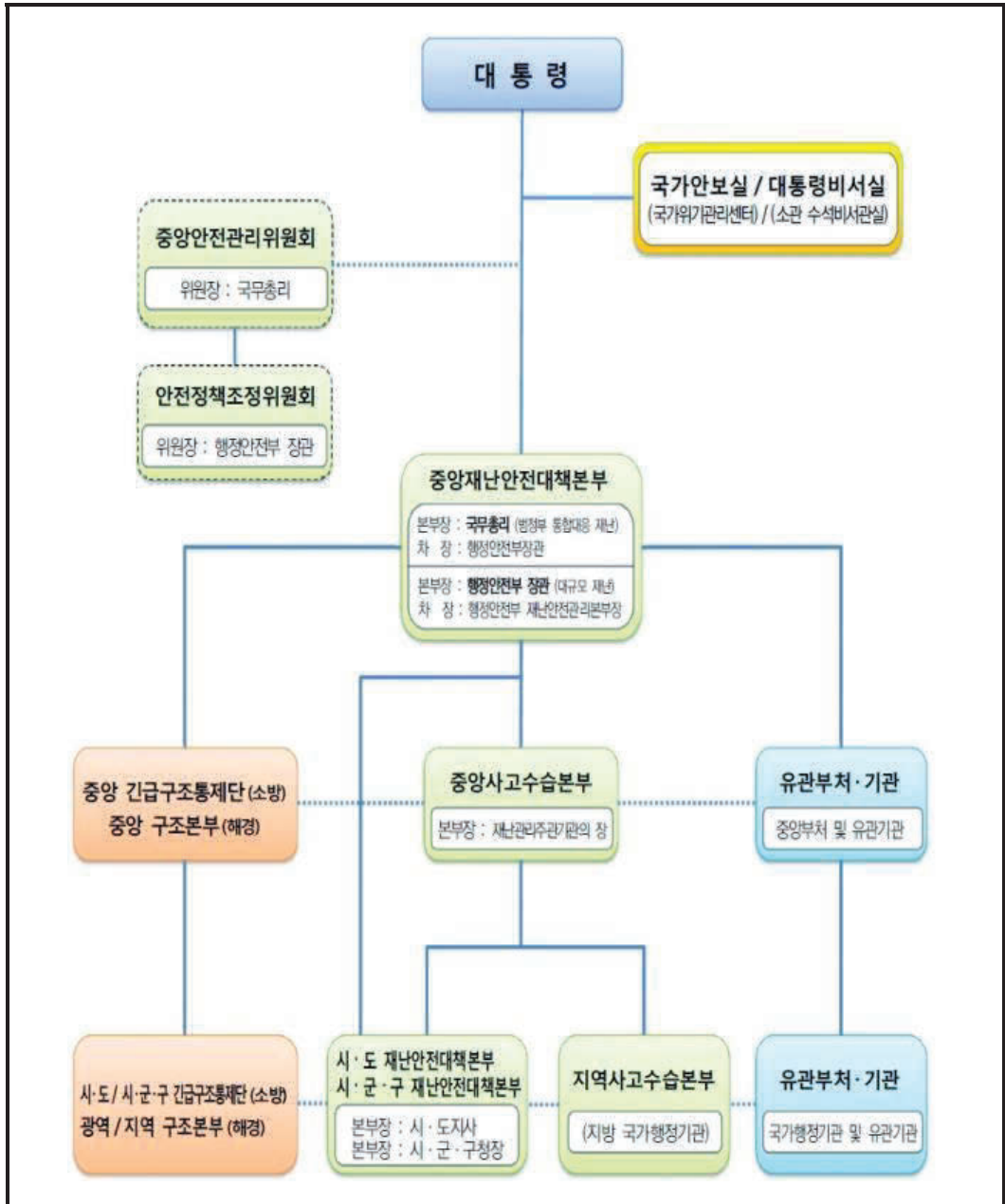
1. 종합체계도

2. 위기관리 대응체계

Part

위기관리 체계

1 종합체계도



2 위기관리 대응체계

가. 관심 - 주의 단계

☐ 풍수해 감염병 대비를 위한 대응 준비 점검

- 행정안전부에서 관심, 주의 경보 발령 시 비상상황 접수 및 풍수해 감염병 발생 여부 모니터링
- 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한 대응체계 점검

나. 경계 단계

☐ 풍수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감염병대책반 가동(필요시)

- 감염병 발생 대비·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협조체계 가동
- 이재민 발생으로 인하여 임시주거시설 내의 감염병 발생이 예상될 경우 초기대응반 편성 및 운영(필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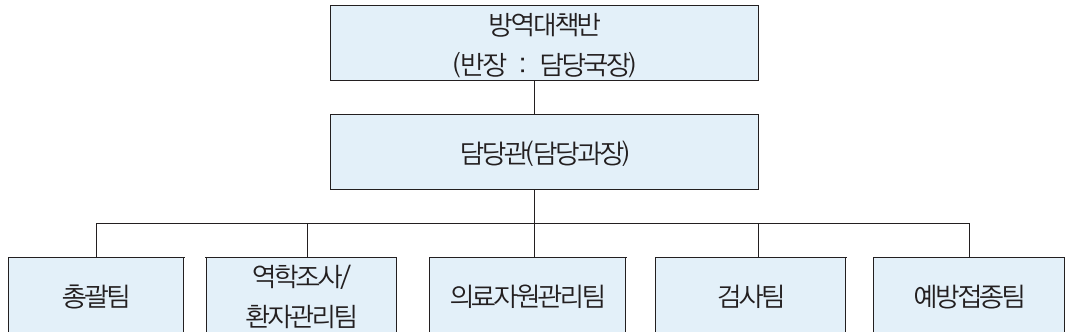
〈질병관리청 초기대응반〉



※ 상황에 따라 확대· 축소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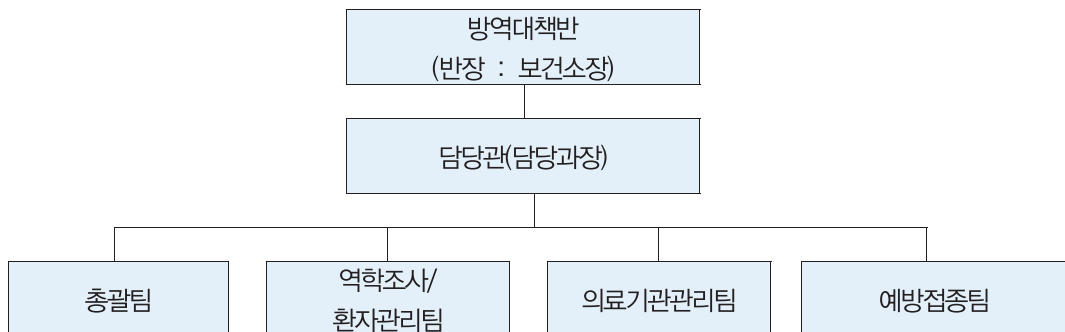
- 시·도, 시·군·구
 - 방역대책반 구성하여 운영(필요시)

〈시·도 방역대책반〉



* 상황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시·군·구 방역대책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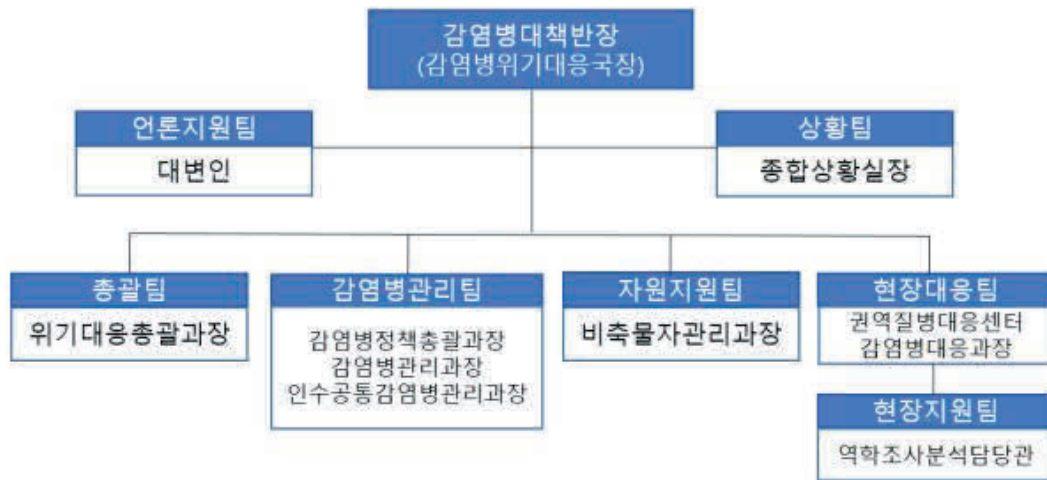
* 상황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다. 심각 단계

☒ 행정안전부에서 풍수해 **심각 경보가 발령**되고, 임시주거시설 내에서 집단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책반 가동(필요시)

- 역학조사 등을 통한 현장조사 실시
- 권역질병대응센터를 통한 현장대응팀으로 구성

〈질병관리청 감염병 대책반〉



※ 상황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라. 신종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이재민 발생 시

㉮ 정부 합동 TF 구성

- 행정안전부 - 질병관리청- 지·자체 TF팀을 구성하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합동점검 및 감염병 발생 대응 총력 대응(필요시)
 - * (붙임10)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임시주거시설 운영 전 체크리스트 참조(p.64)
- 시·도, 시·군·구 : 방역대책반 구성·운영(필요시)

Part IV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태풍 · 호우, 대설)

1. 예방 단계(위기 발생 이전)

2. 위기대응 단계(위기경보 발령)

Part IV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태풍·호우, 대설)

1 예방 단계(위기 발생 이전)

가. 중점 추진사항

- 풍수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대응역량 유지
-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 및 이상 징후 조기 인지
- 풍수해 감염병 대응 자원 사전 비축
- 교육·홍보 등을 통한 감염병 발생 예방

나. 세부 활용내용

- 풍수해 감염병에 대한 대응 조직 체계 정비 및 강화
- 풍수해 감염병 계획 수립, 방역 인프라 구축 및 점검
- 감시체계를 통한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초동 조치
- 방역물자 점검, 방역소독 인력, 검사, 진단장비 및 진단기술 확보
- 감염병 담당자, 역학조사관 등 보건의료인 대상 풍수해 지침 및 임무 숙지
- 국민 및 의료인 등 대상 풍수해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안내, 홍보

* 부록 3 「풍수해 발생 대비 감염병 예방관리 점검사항」 참조(p.77)

다. 풍수해 감염병 예방사업

1)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운영

가) 기간: 매년 5.1~9.30

나) 근무기관: 질병관리청, 각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다) 대상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 설사감염병, 유행성 각결막염

라) 주요업무

- 질병관리청, 시·도, 보건소 24시간 업무 연락체계 유지 등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유행성 각결막염 집단발생 모니터링
- 관내 의료기관 등 질병정보 모니터링 운영 활성화
- 지역사회 풍수해 감염병 대비 예방수칙 홍보활동 강화 등

마) 사업방법

○ (근무방식)

- 사무실 근무 실시
- 집단환자 발생 등 특이 동향 발생 시 신속한 보고
- 야간 및 휴일 집단환자 발생 시
 - 의료기관은 보건소 당직실 또는 감염병관리 공무원에게 유선 통보
 - 감염병관리 공무원은 사무실 출동 대응하며 유선, E-mail 보고

○ (근무시간) 평일: 09시~20시 / 토·일·공휴일: 09시~16시

○ (보고시간)

- 비상방역근무 시간 종료 1시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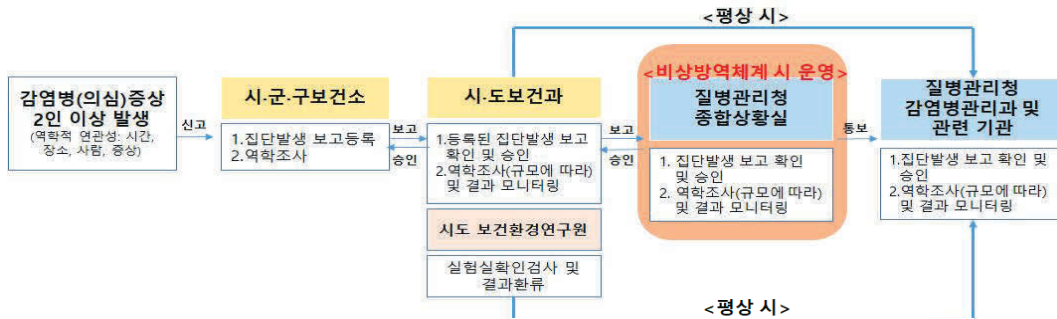
○ (보고내용)

- 일일보고 : 환자발생현황, 검체수거현황, 예보 등 홍보현황
- 집단 사례 발생시 「감염병 집단발생보고 시스템」 보고 및 질병관리청 근무자에게 통보
- 특이사항 발생 시 당일 근무자는 근무 상황 보고

○ (보고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집단환자관리> 일일보고관리> 보고관리를 통하여 매일 환자발생상황 보고
- 환자발생이 없는 경우도 환자발생 없음(Zero report) 보고
- 당일 일일보고 이후 발생 건은 다음날에 포함하여 보고할 것

〈하절기 비상방역 보고 체계도〉



바) 기관별 사업수행방법

- 시·군·구
 - 당일 환자발생현황, 검체수거현황, 예보 등 홍보현황 보고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집단환자관리〉 일일보고관리〉 보고관리
- 시·도
 - 당일 관할 보건소 보고사항을 확인 후 승인조치 및 보고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시·도 단위 감염병병원체 실험실 검사 및 감시
 - 지역사회 감염병병원체 감시자료 분석 및 환류
- 질병관리청
 - 당일 전국 환자발생현황 등 파악 및 특이사항 관련기관 통보

사) 사전 협조사항

- 전국 감염병관리 담당자 연락망 및 당직실 연계 비상연락체계 유지
 - * 비상연락망 개인정보는 성명, 직급,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포함
 - * 시도 담당자는 특히, 24시간 업무연락체계 유지
- 풍수해 발생 시(주의단계 이상) 이재민 발생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비상근무 실시(필요시)
- 관내 의료기관 등 단체시설에 신고요령, 번호안내 등 사전 홍보 실시
 - 질병관리청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
 - 시·도 : 지역 의사회, 시·도 교육청
 - 시·군·구 : 관내 의료기관, 학교, 야외 수련시설, 양로원, 보육시설 등 단체시설

2) 질병정보 모니터링

가) 사업목표

- 풍수해 발생 시 질병정보 참여기관을 통해 감염병 발생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민과 보건기관에 공유하여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기여

나) 기간 : 연중

다) 질병정보 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

(1) 기관별 역할

- 질병관리청: 전국 시·도별 모니터망 연계 및 감염병 발생현황 확인
- 국립검역소: 검역구역 내 감염병 발생 현황 확인, 보건소와 정보 공유
- 시·도: 관내 보건소 모니터망 연계, 감염병 발생현황 확인, 모니터 현황 관리
- 시·군·구: 관내 모니터망 연계 및 감염병 발생현황 확인 등

(2) 모니터 주요업무 <표1>

- 감염병 예방관리요령 홍보
- 감염병(의사)환자 발견·진단 시 인적사항 및 발생 현황 통보, 검체채취(병·의원) 등
- 기타 각종 감염성질환의 유행상태를 관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즉시 통보

<표 1> 모니터별 활동요령

모니터별	활 동 요 령
병·의원, 약국	○ 병·의원, 약국은 평소보다 환자수가 증가하는 질병 진료 시 또는약품 판매 시 보건소에 전화 통보 ○ 보건소는 매일 확인하여 수거·검사(5.1~9.30) - 검체 수거 검사대장 비치 - 설사환자 진료 시 항생제 투여 전 검체 채취
산업체보건관리자, 사회복지시설장, 보건교사 등	○ 집단발생이 예측되는 질병에 대한 동태 파악 ○ 감염병환자의 발생 파악 ○ 특이상황 발생 시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

(3) 모니터 운영

- 감염병(법정감염병이외의 질환도 포함)의 발생 및 유행에 대한 정보 입수 시 이를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하되 기타 상황이 없을 때는 보고 생략

라) 지역사회 민관협조

(1) 감염병 관련 신고 및 보고 독려

- 대상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 및 민간 병·의원 등
- 내용
 - 법정감염병의 신고 및 관련 역학정보 제공 독려
 - * 특히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경우 의심만 되어도 즉시 신고
 - *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 참고
 - 환자발생의 예방에 대한 지원, 감염병 역학조사에 협조
 - 기타 감염병 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2) 주민자율 방역단 및 방역협회조직 활용

-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자율 방역단 활용
- 취약지역 자체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지원
- 수해 발생 시 등 대규모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필요시 한국방역협회 등 관련 단체의 협조·지원 활용

3) 방역소독인력, 방역물자 확보

가) 방역소독 인력 및 장비 확보

- 필요인력 및 장비 사전 확보
- 수해 발생 시 인력 및 장비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은 인근 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간 필요인력, 장비 등 사전 협력체계 구축

나) 방역물자: 손소독제, 락스, 모기유충구제제, 살충제 등

4) 지역별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질병대응센터, 시·도 감염병 관리지원단, 의사회, 약사회, 의료기관, 교육청 등 협조를 통한 효율적 감염병 대응

〈유관기관 협력체계 현황 및 중점점검 내용〉

구 분	대 상	관 계 기 관	중점 점검 내용
인 력	보건 의료진	시·도 감염병 관리지원단 의사회/약사회 의료기관 보건관계기관	○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 시·도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자료분석 지원 등 기술자문 ○ 시·도 단위 지역별 맞춤형 감염병 관리 지원 및 기술자문 ○ 의료진 확보가능 인원 및 출동가능 여부 ○ 치료약품 확보상태
시 설	수용시설	학교 새마을회관/교회	○ 수용시설 확보 상태
장 비	소독장비	보건소 군 방역지원단 방역협회/자율방역단	○ 지원가능장비 종류 및 수량파악 ○ 사용 가능 여부
방 역	예방접종 약품	시·도/보건소 질병관리청	○ 소요예정량 사전 통보 ○ 유사 시 부족분 긴급지원 요청
	소독약품	시·도/보건소	○ 재해대비용 비축량 적정유지 여부 ○ 부족 시 시·도에서 지원

라. 풍수해 감염병 대비 예방수칙 안내

1)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6대 수칙 준수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 수도물 등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 끓인 물을 충분히 식혀서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씻거나 알코올 62% 이상 함유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철저히 함
 - * 손소독제 사용시 손에 있는 세균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효과는 있으나,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며, 손에 흙 등 물리적인 것을 제거할 수 없음
 -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조리하여 익혀먹기
 - 끓인 물이나 생수 등 안전한 물을 먹고 사용하기
 -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
 -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조리 및 준비 금지
 - 위생적으로 조리하기(조리기구는 구분하여 사용하고 조리 후 소독)
 - 물에 닿은 음식은 섭취하지 말고 폐기하기

가) 풍수해 감염병 대비 식품 및 음용수 준비(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

준비하기	식품	• 쉽게 상하지 않거나, 변질되지 않는 식품준비(통조림 등) • 실온 보관 가능하고 별도의 조리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 준비 • 소량의 소금, 설탕 및 개봉하지 않은 음료수(생수 등) 준비 • 간단한 식기(그릇, 숟가락, 젓가락, 컵 등), 행주 등 준비
	음용수	• 1인당 하루 약 3L의 음용수를 준비하되, 최소 3일 동안 마실 양 확보 – 날씨가 덥거나, 임산부 및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을 고려하여 1인당 약 3L 이상의 충분한 음용수 확보
주의사항	식품	• 상한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은 폐기 • 전원이 꺼진 냉장고에서 4시간 이상 보관된 식품(육류, 가금류, 생선, 계란 및 남은 음식 등)은 폐기 • 포장 또는 캔에 보관되지 않은 음식은 버리기 • 부풀어 오르는 등 용기가 변형된 식품은 폐기 • 개봉 시 액체 및 거품 발생하거나 곰팡이가 핀 식품 등은 즉시 폐기 • 우유, 주스와 같이 종이팩에 담아 보관한 식품 폐기
	음용수	• 코울은 탈수 우려가 있으므로 섭취 자제 • 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물은 사용금지
		•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보관 • 쥐 등 설치류가 있지 않은 곳에 보관 • 인트, 유기용매 등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 • 식품·물을 보관하는 용기는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 유통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드시 폐기

〈출처: 미국 CDC〉

나) 식품 캔 및 접촉면 세척 등 살균 권장 사항

구 분	표백액	물의양	청소단계
침수된 물에 닿았을 수 있는 식품 표면	1 테이블 스푼 (또는~15ML)	3.8ML	1. 비누를 사용하여 깨끗한 온수로 씻기 2. 깨끗한 물로 행구기 3. 깨끗한 물 3.8L에 가정용 염소 표백제 1큰술 용액으로 소독하기 4. 자연건조 시키기
부풀어 오르거나 열리지 않는 등 손상된 식품캔	1컵 (240ML)	18.9L	1. 캔 라벨을 제거하기 2. 비누를 사용하여 깨끗한 온수로 씻기 3. 물 18.9L당 표백제 1컵을 섞은 캔에 담그기 4. 자연 건조 시키기 5. 캔의 라벨 재지정하기
물에 접촉한 물체 접촉표면 (식품제외)	1컵 (240ML)	18.9L	1. 비누를 사용하여 깨끗한 온수로 표면청소하기 2. 깨끗한 물로 행구기 3. 표백제 1컵(240ML)과 물 18.9L을 혼합하여 소독하기 4. 자연건조 시키기

〈출처: 미국 cdc〉

2)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반드시 보호복과 장화, 고무장갑 착용
-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
- 작업 중 오염된 상처가 생기거나 작업 후 발열 등 증상 발현 시 인근 병원에서 진료 및 필요시 파상풍 예방접종
 - 파상풍 백신 접종력이 10년이 경과하였으면, Td백신 1회 접종, 이후 매년 10년마다 Td추가 접종(이 중 한번은 Tdap으로 접종) 홍보
 - * (성인 파상풍) 이전 접종력이 없는 경우 0,1~개월, 6~12개월 간격으로 총 3회 접종, 이중 첫 번째는 Tdap접종, 이후 10년마다 Td접종
 - * 특히, 피해지역 청소 및 복구를 위한 인력(자원봉사자 포함)에 대해서는 접종력이 없는 경우 접종 권고가 필요하며, 만약 업무 중 상처가 생긴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진료받도록 함

3) 피부감염병(옴)

-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므로, 약간의 간지러움과 발진 등이 발생한 옴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촉을 피하여야 함
- 만약 환자를 접촉한 경우에는 잠복기가 4~6주로 길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 옴을 옮길 수 있으므로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동시 치료 실시
- 매트리스 및 가구 등의 품목은 세척할 필요는 없으며, 폭신하거나 겹천이 씌워진 가구를 포함하여 철저히 진공청소기로 깨끗하게 청소
- 감염환자의 내복 등을 포함한 모든 옷, 침구, 수건 등은 사용한 후 뜨거운 물(50~60℃) 이상으로 10~20분간 세탁하고 난 후 3일간 사용하지 않음
 - * 옴 진드기는 몸에서 떨어져 나온 후 48~72시간 동안 생존 가능
- 세탁할 수 없는 의류는 3~7일 동안 보관한 후에 재사용

4) 모기매개감염병(말라리아, 일본뇌염)

- 모기가 주로 흡혈하는 시간대인 해질녘부터 새벽까지(밤 10시부터 새벽 4시) 야간에 야외 활동 자제
- 모기는 어두운 색을 좋아하므로,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옷을 착용하고 긴 옷을 입어 노출부위 최소화
- 모기는 땀 냄새를 좋아하므로, 외출 후 귀가하면 바로 샤워하기
- 상처나 얼굴 주변을 피해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기피제 사용

- 실내로 모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충망에 틈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
- 집 주변에 모기가 주로 서식하는 웅덩이 등이 있으면 제거하기

5) 렙토스피라증

-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반드시 보호복과 장화, 고무장갑 착용
- 고여있는 물 등 균 오염이 의심되는 물에서 수영하지 않기
- 피부에 상처 또는 찰과상이 있는 경우 동물의 소변, 체액 등과 접촉하지 않기
- 렙토스피라 균 오염이 의심되는 물에 노출된 경우 수일 후부터 발열 시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함

6) 안과감염병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수건 등 개인 소지품 함께 사용하지 않기
- 눈에 부종, 출혈, 이물감 등이 있을 경우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의 진료받기
- 환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피하기
- 감염된 눈에 넣은 안약을 다른 쪽에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함
- 베개, 침대시트, 수건 등은 자주 세탁하고, 세탁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기
- 콘택트렌즈는 의사가 사용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사용을 중지
- 수건, 베개, 안약, 눈 또는 얼굴용 화장품 및 화장용품, 콘택트렌즈 및 보관통, 안경 등을 다른 사람과 공동 사용하거나 접촉하지 않게 함

7) 머릿니

-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므로 머릿니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접촉을 피하고, 환자가 사용한 옷, 침대 및 침구, 수건 등은 함께 사용하지 않음
- 옷, 침구, 수건 등은 최소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세탁하고 침구 교체
- 뜨거운 물로 세탁(최소 54℃ 이상)을 하도록 함
- 세탁할 수 없는 의류는 드라이클리닝을 하거나, 비닐 팩에 밀봉하여 2주 이상 보관한 후에 재사용

2 위기대응 단계(위기경보 발령)

➔ ① 위기경보 수준 - 관심·주의

가. 상황

- (관심) 태풍·호우·대설 빈발시기*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태풍·호우): 5. 15.~10. 15.
 - *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대설): 11. 15.~다음해 3. 15
- (주의) 태풍·호우·대설 예비특보 또는 태풍·호우·대설주의보가 발령되고 태풍·호우·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감염병 피해 가능성이 높을 때

□ 상황개요

- 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현재 미국 괌 북서쪽 1110km 부근 해상에서 태풍 발생
- 일본 도쿄를 거쳐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

□ 세부내용

- 일시: 0000년 00월 00일 00:00 현재
- 피해지역: 독도 등 동해안 일대
- 태풍정보: 크기(중형), 강도(약), 최대풍속(20m/s), 이동속도(14km/h), 중심기압(998hPa)
- 예상진로: 도쿄 남남동쪽 약 160km해상(0일 0시) ⇒ 독도 동쪽 350km해상(0일 0시)

나. 조치사항

1) 풍수해 감염병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풍수해 위기경보 발령 접수 및 보고 전파 * 위기경보 관련 p.9 참고
- 풍수해 감염병 발생 징후 활동 감시 및 대비·대응

2) 풍수해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체계 및 감시체계 구축

- 풍수해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마련
 - 이재민 발생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 대비 대응체계 구축
 - 부서(기관)별 소관분야 대응상황 파악 및 지자체 등과 핫라인 유지
-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3) 중앙방역물품* 점검 및 지원 및 담당자 교육(필요시)

* 손소독제, 손세정제, 마스크, 모기기피제, 살충제 등

- 감염병 대응 인력 등 대상 지침 및 임무 숙지
- 방역 소독(필요시)
- 감염병 예방 및 홍보(필요시)

다. 기관별 임무 및 역할

기 관	임무 / 역할
질병관리청	○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총괄 ○ 질병발생 조기 감시 신고 및 보고 ○ 재해지역 중앙방역물품 점검 및 지원(필요시) ○ 대국민 예방수칙 제작 및 배포(필요시)
시·도	○ 감염병별 감시체계 가동 및 보고 ○ 재해지역 방역물품 점검 및 지원(필요시) ○ 감염병 대응 인력 등 대상 임무 숙지 및 지침 등 교육(필요시)
시·군·구	○ 재해지역 방역물품 점검 및 지원 ○ 감염병별 감시체계 모니터링 가동 및 보고 ○ 피해 예상 지역 방역 소독(필요시) ○ 지역주민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필요시)

➔ ② 위기경보 수준 - 경계

가. 상황

- (경계) 태풍·호우·대설경보가 발령되고 태풍·호우·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감염병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 상황개요

- 00년 00월 00일 00시00분 현재 미국 괌 동쪽 590km 해상에서 대형 태풍 발생, 제주 서귀포 남쪽 약 600km 부근 해상에서 북진 중
- 태풍경보가 발령되었고, 남해안 일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세부내용

- 일시: 0000년 00월 00일 00:00 현재
- 피해지역: 제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 등
- 태풍정보 크기(중형), 강도(매우강), 최대풍속(49m/s), 이동속도(20km/h), 중심기압(935hPa)
- 예상진로: 서귀포 남쪽 약 410km해상(4일 15시) ⇒ 서귀포 남남동쪽 약 30km해상(5일 03시)
- 피해상황
 - 인적피해: 사망 5명(부산3, 울산2), 실종5명(제주1, 울산1, 경북2, 경남1)
 - 물적피해
 - 이재민 90세대 198명 대피 중
 - 공장(22동), 상가(150동), 차량(1,046여대) 침수 및 선박 전복(2척), 침몰(2척)
 - 도로(17개소), 철도(1개소, 1350m²) 유실, 산사태 발생
 - 일부 정전 발생(228,986가구)
 - 질병관리청 소관 피해 발생 없음.

□ 기타

- 기상 상태: 이 태풍의 중심부근에는 49%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8~12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음

나. 조치사항

1) 풍수해 감염병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풍수해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접수 및 모니터링

2) 풍수해 감염병 대비·대응체계 구축

- 비상연락망 점검 및 유지, 관련부서(기관) 필수요원 비상소집 근무

- 감염병 발생 대비 상황 모니터링 및 내부 보고체계 유지
- 부서(기관)별 소관분야 대응상황 파악 및 지자체 등과 핫라인 유지
- 종합상황실 상황관리 또는 감염병 대책반 설치·운영(필요시)
- 재해지역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감염병 감시체계가동
- 재해지역 중앙방역물품* 점검 및 지원(필요시)
 - * 손소독제, 손세정제, 마스크, 모기기피제, 살충제 등
- 재해지역 방역소독 강화

3)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설치에 따른 방역조치(설치 시)

- 임시주거시설 설치 시 환경점검 실시
- 방역물품 및 홍보물 비치
- 임시주거시설 입소자 및 관리자 대상 감염병 관련 증상 일일감시체계 운영
- 임시주거시설 내 법정감염병 등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이송 및 관리 철저
- 임시주거시설 내·외 감염병 매개체 방역 및 소독 실시
 - * 세부사항은 V.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감염병 관리 참조(p.38~)

4) 수습·복구단계

- 사고수습, 처리상황 종합분석 및 보고
-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속 추진
 - 종합상황실 상황관리 또는 감염병 대책반 운영 지속
 -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운영 지속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살균제, 살충제 등 중앙방역물품 확보 및 지원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다. 기관별 임무 및 역할

기 관	임무 / 역할
질병관리청	○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총괄 ○ 감염병 발생 대비·대응 계획 수립 ○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임시주거시설 내 감염병 발생이 예상될 경우 초기대응반 편성·운영(필요시) ○ 상황발생 일일보고 및 환자 발생 보고 관리 ○ 감염병 감시체계 감시 및 역학조사 지원 ○ 중앙방역물품 지원(필요시) ○ 대국민 예방수칙 제작 및 배포(필요시)
권역 질병대응센터	○ 관할구역 내 상황발생 일일보고 및 환자 발생 보고 관리 ○ 관할권역 내 감염병 발생 정보 및 환자정보분석 및 관리 ○ 관할권역 내 감염병 감시·역학조사 및 현장 지원
시·도	○ 감염병별 감시체계 가동 및 보고 ○ 상황발생 일일보고 및 환자 발생 보고 관리 ○ 시·도 방역대책반 구성·운영(필요시) ○ 시·도 역학조사반 운영 및 역학조사 실시 - 시·군·구 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두 개 이상의 관할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경우 ○ 재해 대비 감염병 대응 자원 배포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리(설치 시) - 임시주거시설 설치 시 환경점검 실시 - 임시주거시설 내 방역물품 및 홍보물 비치 - 임시주거시설 입소자 및 관리자 대상 감염병 관련 증상 일일감시체계 운영 - 의심환자, 환자, 접촉자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및 관리 - 임시주거시설 내·외 방역 및 소독 실시
시·군·구 (보건소)	○ 감염병별 감시체계 가동 및 보고 ○ 상황발생 일일보고 및 환자 발생 보고 관리 ○ 시·군·구 방역대책반 구성·운영(필요시) ○ 시·군·구 역학조사반 운영 - 관할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경우 ○ 감염병 대응 자원 배포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리(설치 시) - 임시주거시설 설치 시 환경점검 실시 - 임시주거시설 내 방역물품 및 홍보물 비치 - 임시주거시설 입소자 및 관리자 대상 감염병 관련 증상 일일감시체계 운영 - 의심환자, 환자, 접촉자 발생시 의료기관 이송 및 관리 - 임시주거시설 내·외 방역 및 소독 실시 ○ 관할지역 방역 소독
보건환경연구원	○ 시·도 단위 감염병 실험실 검사 ○ 시·도 단위 감염병 병원체 감시
의료기관	○ 환자 및 의심증상자 치료 및 신고·보고 ○ 환자 및 의심증상자 입원 격리 ○ 의심증상자 증상, 치료결과 등 관련사항 보건소 통보 ○ 역학조사 시 의무기록 등 제공

➔ 3 위기경보 수준 - 심각

가. 상황

- 태풍·호우·대설 경보가 발령되고 태풍·호우·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하고, **감염병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 대설경보 발표

- 발표시간: 0000년 00월 00일 07시00분
- 해당구역: 충청남북도
- 발효시간: 0000년 00월 00일 07시00분
- 내용
 - 위 구역에 대설경보를 발표함
 - 현재 적설(00일 00시 00분 현재): 9~11cm
 - 앞으로 예상적설(현재~오늘밤까지): 15~25cm
 - 총 예상적설: 25~35cm
- 특보발효현황(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이후)
 - 대설경보: 충청남북도
 - 대설주의보: 경기도
- 참고사항
 -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많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

□ 피해발생 상황

- 고속도로 통행불가지역 발생
 - 심야시간대의 강설로 00일 06시경 8~10cm의 적설로 호남고속도로 계룡IC~회덕분기점 구간에 차량 30중 추돌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 강설 및 차량추돌 사고로 정체구간이 길어지면서 양방향 통행 불가로 동 구간 내 800여대의 차량 고립
- 산간지역 민가 고립 및 농림시설(비닐하우스 등) 파손
 - 00일 09시경 대전 유성, 충남 공주(계룡산 인근)·연기, 충북 청원군 일원 35~45cm의 적설로 비닐하우스 280동 붕괴, 민가 95가구 고립, 노후가옥 5채 부분파손

나. 조치사항

1)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풍수해 감염병 발생 접수 및 모니터링
- 풍수해 감염병 피해 상황 보고 및 전파

2) 풍수해 감염병 비상대응체계 구축

- 비상연락망 점검 및 유지, 관련부서(기관) 필수요원 비상소집 근무
- 풍수해 감염병 현황 파악 및 추가 피해 발생 대비 상황 모니터링 및 내부 보고체계 유지
- 재난현장, 소속·산하기관 등과 핫라인 유지
- 종합상황실 상황관리 또는 감염병 대책반 설치·운영(필요시)
- 상황점검회의 개최(필요시)

3) 총력대응단계

- 종합상황실 상황관리 또는 감염병 대책반 설치·운영
- 재해지역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감염병 감시체계 가동
 - 의료기관에 응급실증후군 및 법정감염병 신고 및 보고 강화
 - 집단 감염병 발생 조기 인지가 가능한 약국, 산업체 등 시설 대상 모니터링 강화
- 감염병 발병 시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실시
- 현장대응팀 파견 및 비상연락체계 가동(필요시)
- 재해지역 중앙방역물품* 점검 및 지원(필요시)
 - * 손소독제, 손세정제, 마스크, 모기기피제, 살충제 등
- 재해지역 방역소독 강화

4)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리(설치 시)

* 세부사항은 V.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감염병 관리 참조(p.38~)

- 임시주거시설 설치 시 환경점검 실시
- 방역물품 및 홍보물 비치
- 임시주거시설 입소자 및 관리자 대상 감염병 관련 증상 일일감시체계 운영
- 임시주거시설 내 법정감염병 등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이송 및 관리 철저
- 임시주거시설 내·외 감염병 매개체 방역 및 소독 실시

5) 기타 홍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언론 모니터링, 오보대응

6) 수습·복구 단계

- 사고수습, 처리상황 종합분석 및 보고
-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속 추진
 - 종합상황실 상황관리 또는 감염병 대책반 운영 지속
 -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운영 지속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살균제, 살충제 등 중앙방역물품 확보 및 지원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및 언론 모니터링

다. 기관별 임무 및 역할

기 관	임무 / 역할
질병관리청	○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총괄 ○ 상황발생 일일보고 및 환자 발생 보고 관리 ○ 감염병 감시체계 감시 및 역학조사 지원 ○ 임시주거시설 내 집단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책반 가동(필요시)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현장대응팀 파견(필요시)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감염병 위험평가 실시(필요시) ○ 중앙방역물품 지원(필요시) ○ 대국민 예방수칙 제작 및 배포(필요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관할권역 내 상황발생 일일보고 및 환자 발생 보고 관리 ○ 관할권역 내 감염병 발생 정보 및 환자정보 분석 및 관리 ○ 관할권역 내 감염병 감시·역학조사 및 현장 지원 ○ 관할권역 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현장대응팀 파견 지원(필요시) ○ 관할권역 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감염병 위험평가 실시(필요시)
시·도	○ 감염병별 감시체계 가동 및 보고 ○ 상황발생 일일보고 및 환자 발생 보고 관리 ○ 시·도 방역대책반 구성·운영(필요시) ○ 시·도 역학조사반 운영 및 역학조사 실시 ○ 재해 대비 감염병 대응 자원 배포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리(설치 시) - 임시주거시설 설치 시 환경점검 실시 - 임시주거시설 내 방역물품 및 홍보물 비치

기 관	임무 / 역할
	- 임시주거시설 입소자 및 관리자 대상 감염병 관련 증상 일일감시체계 운영 - 의심환자, 환자, 접촉자 발생시 의료기관 이송 및 관리 - 임시주거시설 내·외 방역 및 소독 실시
시·군·구 (보건소)	○ 감염병별 감시체계 가동 및 보고 - 기존 감염병 감시체계 유지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감염병 감시 실시 ○ 상황발생 일일보고 및 환자 발생 보고 관리 ○ 시·군·구 방역대책반 구성·운영(필요시) ○ 시·군·구 역학조사반 운영 - 관할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경우 ○ 감염병 대응 자원 배포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리(설치 시) - 임시주거시설 설치 시 환경점검 실시 - 임시주거시설 내 방역물품 및 홍보물 비치 - 임시주거시설 입소자 및 관리자 대상 감염병 관련 증상 일일감시체계 운영 - 의심환자, 환자, 접촉자 발생시 의료기관 이송 및 관리 - 임시주거시설 내·외 방역 및 소독 실시 ○ 관할지역 방역 소독
보건환경연구원	○ 시·도 단위 감염병 실험실 검사 ○ 시·도 단위 감염병 병원체 감시
의료기관	○ 환자 및 의심증상자 치료 및 신고·보고 ○ 환자 및 의심증상자 입원 격리 ○ 의심증상자 증상, 치료결과 등 관련사항 보건소 통보 ○ 역학조사 시 의무기록 등 제공

I

II

III

IV

V

VI

VII

Part V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감염병 관리

1. 임시주거시설 설치 전 확인사항
2. 임시주거시설 설치에 따른 감염병 감시

Part V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감염병 관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감염병 관리(수행기관 : 시·도, 시·군·구(보건소))

1 임시주거시설 설치 전 확인사항

가. 임시주거시설 설치 시 환경점검

- 식품위생, 수질, 화장실, 폐기물 등 감염병 관리에 취약한 환경이 있는지 점검
 - (장소)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독립되고 안전한 공간으로 지정하며, 시설 내 의심자 발생 시 격리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급식·급수 등 생활 필수시설 및 편의시설
 - 도로와 접해 있거나 차량 등의 접근이 용이한 시설
 -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은 시설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
 - (수질) 식수공급원 및 생활용수(목욕, 양치 등)의 안전성 확인
 - (화장실) 손씻기 시설(비누 등) 및 위생상태 등 확인
 - (폐기물) 휴지통 유무 및 위치, 위생상태 등 확인
 - (의심환자 미발생 시) 폐기물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으로 처리
 - (의심환자 또는 확진자 발생 시) 폐기물은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대책」 등을 참고하여 별도 처리
 - (창문 및 방충망) 환기 가능 여부, 방충망 등 확인
 - 방충망 점검사항 : 파손 여부, 열림 여부, 창문과 방충망 틈 발생 여부, 방충망 물 빠짐 구멍 유무 등
 - (주변) 임시주거시설 주변 인공용기, 웅덩이 등 물이 고인 장소 확인



* 붙임 1 「이주민 임시주거시설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점검표」 참조(p.50)

- 관할 보건소, 의료기관, 임시주거시설 담당자 간의 비상연락망 확인

나. 감염병 환자 발생 대응 점검 사항

-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이송체계 확인
 - 관할 보건소 및 119 비상연락망 및 (음압) 구급차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이송 가능한 병원 사전 지정 및 비상 연락망 확보 등
- 감염병 관리에 취약한 환경 발견 시 임시주거시설 관리자와 정보 공유

다. 방역물품 및 홍보물품

- 공용 장소 손 소독제 등 비치 및 안내 표지판 설치
 - 수시로 시설 내 화장실 등 개수대에 손 세정제(액체비누 등) 또는 손 소독제, 종이 타월 등을 확인하여 충분히 채움
 - 화장실, 급식소, 임시 격리실, 임시주거시설 관리실(접수대 포함), 휴게실(설치 시), 유아실(설치 시) 등

* 임시주거시설 규모 및 운영기간에 따라 비치할 장소 및 수량은 탄력적으로 적용

- 손소독제는 알코올이 함유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제품을 사용
- 가능한 손씻기를 권고하되, 물이 안전하지 않거나 손씻기 시설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손소독제 사용을 권장

- 기타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물품(체온계, 마스크등)은 비축 현황, 임시주거시설 규모(수용인원 등), 임시주거시설 운영 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히 비치

* 붙임 2 「이주민 임시주거시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자원 목록」 참조(p.50)

- 감염병 예방 교육관련 홍보물 비치
 - 개인위생수칙 및 감염병 예방 홍보물을 포스터, 배너 등으로 제작하여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비치

* 붙임 3 「개인위생수칙 및 감염병 예방 홍보물」 참조(p.51)

2 임시주거시설 설치에 따른 감염병 감시

가. 감염병 관련 증상 일일감시체계 운영

- 대상 : 임시주거시설 입소자 및 관리자(자원봉사자 포함)
- 감시 주요 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모기매개감염병, 렙토스피라증, 파상풍, 안과감염병, 신종감염병 등(대유행시)
 - (능동감시) 감염병담당자 및 임시주거시설 담당자에게 감염병 증상 등 교육하여 조기 발견 하도록 교육
 - (수동감시) 감염병 의심증상 발생 시 감염병담당자 및 임시주거시설 담당자에게 즉시 알릴 수 있도록 안내
 - 주요 감염 의심증상: 설사, 발열, 기침, 발진, 구토 등
 - 코로나19 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오한, 근육통 등
 - * 붙임 6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감염병 일일감시현황 보고(예시)」 참조(p.55)
- 감염병 의심증상 발생 시 보건담당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안내
 - * 붙임 7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감염병 의심증상 수동감시 안내문」 참조(p.57)

나. 임시주거시설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청소 및 소독 강화
- 주기적인 환기(1일 2회 이상 권고) 실시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항상 열어두기
 - 창문을 항상 열어두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최소 2시간 마다 1회 이상 환기 실시

다. 감염병 (의심)환자 관리

-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진료 원칙
 - (절차) 감염병(의심) 환자 발생 시 1) 격리 및 보고, 2) 의료시설로 이송, 3) (의심) 환자 체류 공간 소독 및 폐쇄
 -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진료 및 검사 실시
 - * 즉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울 경우 임시 격리실 또는 다른 사람의 접촉을 제한할 수 있는 개인

구역(텐트 등)에서 대기

**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일 경우,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마스크 착용

*** 붙임 8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 임시격리실 이용 안내문」 참조(p.62)

- 감염병 담당자는 의심환자 모니터링을 통해 최종 진단명 확인
- 감염병 의심환자 이용 공간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의료기관에서 법정감염병 환자 등으로 진단 시 감염병별 관리지침 적용
 - 의료기관에서 법정감염병 환자 등(의사환자, 확진환자, 병원체보유자)으로 진단 시 감염병별 관리지침을 적용하여 역학조사 및 환자/접촉자 관리 실시
 - * 풍수해 관련 주요 감염병별 관리지침 참조(p.3)
 - 환자/접촉자 관리 시 손 위생 및 개인보호구 철저히 준수

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 소화기 및 호흡기 감염관리 <출처: 미국 CDC>

1) 소화기 감염관리 대책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의 일반적인 조치
 -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손 씻기
 -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 및 유지
 - 식기나 음료수 용기를 함께 사용하지 않기
 - 칫솔이나 타월과 같은 개인 화장실 용품 등을 타인과 공유 사용 금지
- 소화기 감염환자에 대한 조치
 - 설사와 구토가 멈춘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 분리(격리) 조치
 - 유증상자 및 감염병 의심 환자 등이 이용 화장실 별도 제공
 - 가능하면 음식 제공 시 공간을 분리하여 제공
 - 구토물을 담고 기저귀를 버릴 수 있는 비닐봉지를 사전에 제공
- 실내 소독 및 환경 유지
 - 청소중에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액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한 경우 가운이나 앞치마로 가리기
 - 구토물이나 대변을 청소하기 위해 종이 타월로 닦은 후, 사용한 타월은 플라스틱 쓰레기 봉투에 버리고, 물로 해당 부위 씻어냄
 - 화장실(환자가 사용하는 화장실은 매시간 청소), 손잡이 및 손잡이와 같이 자주 만지는 딱딱한 표면은 가능하면 하루에 3~4회 이상 소독

- 소독 방법

- 안전을 위하여 장갑 착용
- 희석된 가정용 표백제(1000ppm 차아 염소산 나트륨 또는 6%가정용 표백제)를 사용
- 희석된 표백제로 젖은 표면은 가능하면 해당 부위를 10분동안 젖은 상태로 유지 후
- 해당 부위를 자연건조 시키기
- 사용한 장갑은 벗고 비닐 봉지에 버린 후,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핸드젤을 사용하기(단, 손이 오염될 경우 반드시 비누로 손씻기)

2) 호흡기 감염관리 대책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의 일반적인 조치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거주 시 규칙적인 손씻기 실시
 - 호흡기 비말 감염가능성이 있는 물체의 표면이나 물체를 만진 후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시에는 반드시 손씻기 시행
 - 식기나 음료수 용기를 함께 사용 자제
 - 칫솔이나 타월 등 개인 용품 타인과 공유 사용 금지
 - 가능한 경우 침대를 1~2미터로 분리하여 임시거주시설 거주자 사이에 호흡기 방울이 퍼질 가능성 줄이도록 환경 조성
-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을 위한 조치
 - 호흡기 위생 및 기침 에티켓을 안내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호흡기 질환 에티켓 안내문(예시)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 호흡기 분비물 및 오염된 물체, 물질과 접촉한 후 손 위생을 수행하십시오

-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긴밀한 접촉을 피하기
- 유증상 또는 호흡기 질환이 의심될 경우 별도의 공간(또는 구역)에 격리
- 호흡기 질환 증상이 사라진 후 24시간까지 유증상자 등을 격리하여 접촉자 발생 최소화

마. 임시에방접종(필요시)

- 지역의 감염병 유행, 임시주거시설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재민에게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에방접종 시행 계획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 예방접종 실시 시, 예진 및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철저

바. 방역 및 소독

- (예방)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외 계절별 위험 감염병 및 매개체 등에 따라 방역 항목 결정 후 구서, 구충 등 주기적으로 방역 실시
 - * 붙임 9 「임시주거시설 모기 방제를 위한 방역 소독 실시 안내문」 참조(p.59)
- 모기 방제는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지침」에 따라 실시
 - 야간에 주기적인 공간살포로 외부 방역 실시
 - 수용시설 내·외벽에 잔류성 방제약품으로 잔류 분무
 - 방제 활동 이전(24시간 전) 방제에 사용될 약제, 방제방법, 방제실시 시간 등의 구체적인 방제실시 내역을 공지
 - 취침 시 실내에 모기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가정용 방제약품으로 실내 공간 처리
 - 임시주거시설 운영기간이 길어질 경우 유충 제거를 위한 방제 실시
- (관리) 법정감염병 환자 확진 시 감염병별 관리지침에 따른 방역 및 소독조치 시행

붙임1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점검표

연번	점검 장소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1	생활 (수면)실	○ 개별 수면구역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분리되어 있는가?		
		○ 방충망 설치가 되어 있는가?		
		○ 방충망은 파손 등 틈 발생이 있는가?		
		○ 환기가 가능한가?		
2	취사 (조리)실	○ 임시주거시설 내 상수도 또는 안전한 식수가 공급되는가?		
		○ 지하수를 사용한다면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한가?		
		○ 음식 보관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 조리대 및 조리기구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가?		
		○ 손씻기 시설(또는 손소독제)이 갖추어져 있는가?		
3	급식실	○ 손씻기 시설(또는 손소독제)이 갖추어져 있는가?		
4	화장실	○ 손씻기 시설(또는 손소독제)이 갖추어져 있는가?		
		○ 덮개가 있는 휴지통이 있는가?		
		○ 적절한 환기가 가능한가?		
5	폐기물	○ 손씻기 시설(또는 손소독제)이 갖추어져 있는가?		
		○ 덮개가 있는 휴지통이 있는가?		
		○ 생활(수면)실과 분리된 구역에 있는가?		
6	임시주거 시설 주변	○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인공용기, 웅덩이 등 물이 고인 곳이 있는가?		
7	공통	○ 각 분야(식품, 위생)의 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위생관리계획이 준비되어 있는가?		

* 점검결과 취약한 사항은 임시주거시설 관리부서와 공유함

* 손씻기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손소독제를 필수로 지급(개인별 또는 1가구당)하여야 함

붙임2 이주민 임시주거시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자원 목록

구분	물품		비고
필수	손소독제(개인별 또는 1가구당)		
	소독제		
	방제장비		
	방제약품		
	방역소독 작업자의 개인보호 장비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배너 등)		
	개인보호복(앞치마, Level D, 전신보호복 등)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수술용 마스크, N95 또는 동급 마스크		
	환경점검표		
	필요 자원 목록표		
	안내문 3종(붙임7, 붙임8, 붙임9 참조)		
	일일감시현황 양식		
	관련 지침		
	역학조사서		
	관계기관 연락처		
	사무용품		
선택	공통	손세정제(비누, 물비누 등)	
		기저귀(성인용)	
		가정용 살충제	
		의료폐기물통	
		염소측정기	
		온도계	
	하절기	모기기피제	
		모기장	

※ 이주민 임시주거시설 설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비축물품현황 및 임시주거시설 상행(수용 인원, 기간 등)을 고려하여 종류 및 수량은 탄력적으로 적용함

〈참고자료〉

-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별표1.확보하여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
 1. 응급구호세트(1명 기준): 담요, 찻술,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면장갑, 간소복, 속내의, 양말, 바닥용 매트, 슬리퍼, 베개, 안대, 귀마개, 치약, 물티슈, 생수, 면도기(남자), 생리대(여자)
 2. 기타 개별구호물품: 응급의약품(소독약, 상처치료 연고, 밴드, 붕대, 반창고, 거즈, 핀셋, 스프레이 파스 등), 분유세트(분유 및 젖병), 기저귀, 모기약, 위생청결을 위한 용품(삼푸, 린스, 바디클렌저 등) 등
- (참고) 응급의료 자재 및 장비 : 「풍수해(태풍·호우·대설)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2020 (보건복지부)
 1. 자재: N95마스크, 기도유지장치, 의약품, 인공호흡마스크, 예방주사약, 들것, 수동식 인공호흡기, 압박붕대, 대퇴부골절반침, 허리보호대(척추보호대)
 2. 장비: 구급차(전문 및 기본 유닛차량), 심실제세동기, 척추고정판

붙임3 개인위생수칙 및 감염병 예방 홍보물

☞ 올바른 손 씻기 홍보자료

2022.8.18.

질병관리청



기침예절 홍보자료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홍보 자료II

[illegible]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홍보 자료Ⅲ

2022. 5. 27. 질병관리청

여름철, 꼭 지켜주세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01. 올바른 손씻기 6단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뼉 밀
					

02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03



물은 끓여 마시기

04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거나 껍질 벗겨 먹기

05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하지 않기

06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07



생선·고기·채소 도마 분리 사용
칼, 도마는 조리 후 소독하기

☞ 모기매개 감염병 홍보 자료

질병정보 응급환자 **1339**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모기매개 감염병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기피제,
모기장 등 모기 회피 용품 사용

외출시 밝은색의 긴팔,
긴바지를 착용

야외에서 풀숲, 물웅덩이
주변은 되도록 가지 않을
것을 권고

2020/10/20
2021/10/20

정선 7.1

2020/10/20
2021/10/20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유행성 눈병 홍보 자료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알림·자료 > 홍보자료 > 에서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4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입소 서식(예시)

입소 서식			
이름		주민등록번호	-
나이	(세) (개월)	성별	☐ 남 ☐ 여
연락처		이전 거주지	
기저질환 유무	고혈압 ☐ 예 ☐ 아니오	임시주거시설 이름 / 구역	/
	당뇨 ☐ 예 ☐ 아니오	임시주거시설 입소일시	년 월 일
	천식/폐질환 ☐ 예 ☐ 아니오	복용중인 약물	☐ 있음 ☐ 없음
	결핵 ☐ 예 ☐ 아니오		
	B형간염 ☐ 예 ☐ 아니오	임신여부	☐ 예(예정일:) ☐ 아니오
그 외 기저질환	()	가족 동반 여부	☐ 예 (명) ☐ 아니오
아래 증상을 가지고 있다면 체크해주세요			
발열/오한	☐ 예 ☐ 아니오	발진	☐ 예 ☐ 아니오
호흡기증상 (가래, 콧물, 기침, 인후통, 각혈)	☐ 예 ☐ 아니오	소화기증상 (구토, 설사, 혈변)	☐ 예 ☐ 아니오
눈 충혈 + 눈 통증	☐ 예 ☐ 아니오	그 외 증상	

붙임5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감염병 감시 정기 선별 보고(예시)

정기 선별 설문지			
이름		주민등록번호	-
설문지 작성일시	년 월 일	임시주거시설 이름 / 구역	/
아래 증상을 가지고 있다면 체크해주세요			
발열/오한	☐ 예 ☐ 아니오	증상 발생 시기	일 전
발진	☐ 예 ☐ 아니오	증상 발생 시기	일 전
호흡기 증상 (기침, 콧물, 가래, 인후통, 각혈)	☐ 예 ☐ 아니오	증상 발생 시기	일 전
소화기증상 (구토, 설사, 혈변)	☐ 예 ☐ 아니오	증상 발생 시기	일 전
눈 충혈 + 눈 통증	☐ 예 ☐ 아니오	증상 발생 시기	일 전
그 외 진료가 필요한 증상	☐ 예 ☐ 아니오	증상 발생 시기	일 전
조사기간동안 의사의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조사 기간 동안 약물을 처방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증상이 있으면 진료소를 방문하거나 관리자에게 알려주세요.			

I

II

III

IV

V

VI

VII

붙임6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감염병 일일감시현황 보고(예시)

기관명: ○○○도 보고일시: '22. 8. 14.

시설명: ○○○체육관 등 2개(시/군) 3개소

1. 시설현황

시설명	위치 (도로명주소)	시설 유형	시설면적 (㎡)	텐트 수 (개)	입소가능 인원(명)	현 입소 인원
누계			—	30	30	13
○○○체육관	○○시...	...	109.5	20	20	10
...	○○시...	...	80.9	7	7	2
...	□□군...	...	54	3	3	1

2. 임시주거시설 입소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전일자 입소확인 인원 (A)	신규 입소 인원 (B)	퇴소 인원 (C)	현 입소 인원 (A+B-C)	현 입소 인원의 성별·연령별 현황						비고
					성별		연령별				
					남	여	0~19세	20~49세	50~64세	65세 이상	
누계	11	5	3	13	6	7	—	4	9	—	—
○○시	10	5	3	12	5	7	—	3	9	—	—
□□군	1	—	—	1	1	—	—	1	—	—	—

3. 감염병 일일감시현황

□ 성별·연령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일자	총 인원	성별		연령별(세)				비고
			남	여	0~19세	20~49세	50~64세	65세 이상	
누계	—	3	2	1	—	2	1	—	
○○시	8.14. (금일)	1	1	—	—	1	—	—	
	8.13.	1	1	—	—	1	—	—	
□□군	8.13.	1	—	1	—	—	1	—	

□ 증상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일자	총인원	증상 (중복 응답)										
			발열	기침	인후통	발진	설사	구토	복통	두통	안구 충혈	신경계 증상	기타 증상
누계	-	3	1	2	1	-	1	1	1	-	-	-	-
○○시	8.14. (금일)	1	1	1	-	-	-	-	-	-	-	-	-
	8.13.	1	-	-	-	-	1	1	1	-	-	-	-
□□군	8.13.	1	-	1	1	-	-	-	-	-	-	-	-

□ 대상자 상세현황

구분	분류 ¹⁾	구역 ²⁾	성 별	출 생 년 도	증상										조치		의료기관 진료 결과 ⁴⁾	기 타
					발 열	기 침	인 후 통	발 진	설 사	구 토	복 통	두 통	안 구 충 혈	신 경 계 증 상 ³⁾	기 타 증 상	의료 기관 이송		
○○시 -1	이재민	○○○ 체육관	남	1986	○	○	-	-	-	-	-	-	-	-	○	-	코로나 확진환자 (8.14.확진)	
○○시 -2	"	...	남	1990	-	-	-	-	○	○	○	-	-	-	-	자택격리	코로나 확진환자 (8.13.확진)	
□□시 -1	"	...	여	1961	-	○	○	-	-	-	-	-	-	-	-	자택격리	코로나 확진환자 (8.13.확진)	

1) ① 이재민과 ② 관리자(자원봉사자 포함)로 분류하여 기술

2) 이재민의 경우 텐트 번호, 관리자의 경우 담당 관리 구역을 기술

3) 신경계 증상은 복시, 시야흐림, 마비, 발음장애 등을 의미함.

4) 의료기관 진료 결과는 ① 진료중, ② 감염병 질병명-검사중, ③ 감염병 질병명-의사환자, ④ 감염병 질병명-확진환자, ⑤ 감염병 환자 아님 중 하나를 기술하고 모니터링하며 기술함.

붙임7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감염병 의심증상 수동감시 안내문(예시)

안 내 문

임시주거시설 내에서는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은 즉시 임시주거시설 직원 또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기침, 호흡곤란

구토, 설사, 복통, 혈변

가려움, 발진, 수포

눈이 충혈 되거나 눈곱이 심하게 생긴 경우

또는 전신 컨디션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

☎ 문의전화: ○○○ (000) 000-0000

붙임8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 임시 격리실 이용 안내문(예시)

- 이 안내문은 임시주거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 관련 증상을 보이는 의심환자의 의료기관으로 이송 전까지 임시 격리실**을 이용하는 분에게 제공됩니다.
- 귀하께서는 의료기관으로 이송 및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다음의 격리실 이용 수칙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임시 격리실 이용 시 준수사항

- 감염병 의심 증상으로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실 **바깥 외출이 제한**됩니다.
- 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 이송 전까지 임시 격리실에서 **혼자 생활**하셔야 합니다.
- 격리실은 **자주 환기**를 시키고, 격리실 내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실 내에서는 지급되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 또는 보호자와 연락을 원하는 경우 **격리실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자의 안전과 보건위생을 위해 격리실 **관리자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격리자의 보호자 준수사항

- 임시격리실은 지정된 보호자(1~2명)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지정된 보호자 외 출입 금지)
- 최대한 임시 격리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임시격리실 입실 시 보호자는 **개인보호장비(마스크, 장갑)**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 임시 격리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II

III

IV

V

VI

VII

붙임9 임시주거시설 모기 방제를 위한 방역 소독 실시 안내문(예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기 방제를 위한 방역 소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방역소독 실시 방법 및 일정 -

방법	약품	장소	일정 및 시간	방역구간	비고
(예시) 가열 연막법	**약품	**임시주 거시설	00.00(월) 19:00~19:30 00.00(월) 19:30~19:50	임시주거시설 인근 임시주거시설 내 정화조	주 2회 (매주 월, 목 실시)
잔류 분무	**약품	**임시주 거시설	00.00(월) 20:00~21:00	임시주거시설 내·외벽	월 1회 실시 (첫째주 월요일 실시)

주의사항

- 외부 방역 실시기간 동안 임시주거시설 창문을 닫고, 외부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주거시설 내·외벽에 잔류성 방제 약품을 살포할 예정으로, 가능한 내·외벽의 접촉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 주의 당부)

붙임10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임시주거시설 운영 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사항	확인
1	이주민들이 개인별 또는 가족별로 분리하여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인가?	☐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독립적인 방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최우선으로 고려	
2	취약자에 대한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인가?	☐
	고령자, 영유아, 임신부,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신장질환, 면역저하자 등	
3	독립적인 공간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거주 공간이 구분되는가?	☐
	천장이 있는 텐트, 천장이 없는 텐트, 임시 격벽 등을 이용하여 얼굴보다 높은 높이로 설치	
4	2m 이상 너비의 거주 공간 간 간격 및 통로를 확보하였는가?	☐
	거주공간 간 간격 외에도 충분한 너비의 통로를 지정하여, 통로로만 이동할 수 있도록 함	
5	입소 전 감염병 관리를 위한 선별 구역을 설치하였는가?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며, 선별을 거치지 않으면 입소가 불가능	
6	거주자 중 발열·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 격리를 시킬 수 있는가?	☐
	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하는 것이 이상적이거나, 그 전까지 대기가 가능한 격리 공간이 있어야 함	
7	독립적 공간이나 격리 공간의 화장실·세면실과 동선을 확인하였는가?	☐
	샤워, 대소변 등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동선이 겹치지 않아야 함	
8	공용 식당에서 2m 이상 거리를 두고 식사가 가능한가?	☐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대각선으로 앉거나 모이는 시간을 다르게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	
9	시설 내 모든 공간에서 환기가 가능한가?	☐
	모든 공간이 자연환기 또는 인공환기가 가능해야 하며, 격리 공간은 별도로 공조되어야 함	
10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를 구역별로 충분히 배치하였는가?	☐
	손세정제와 체온계는 가족별로 1개씩 제공하고, 여의치 않으면 비접촉 체온계를 구비해야 함	
11	감염병 치료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마련되었는가?	☐
	발열 없는 소화기질환 환자와 발열 및 호흡기질환 환자 치료 공간이 분리되어야 함	
12	발열 및 호흡기환자 진료를 위한 선별진료실이 마련되었는가?	☐
	음압시설을 갖추거나 별도의 공조를 갖는 선별 진료실이 필요함	

Part VI

풍수해 감염병 관련 Q&A

Part VI

풍수해 감염병 관련 Q&A

Q 01 침수된 집에서 생길 수 있는 위생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까요?

A ● 안전한 물을 마시거나 사용합니다.

- 장마로 불어난 물에는 각종 가축의 분변도 오염되어 있는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 식수로는 반드시 끓인 물이나 병에 포장된 음용수(생수)를 드셔야 합니다.
 - 1분 정도 끓는 물에서는 대부분의 미생물이 사멸되지만, 화학물질에 오염된 물의 경우에는 끓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병에 포장된 음용수를 드셔야 합니다.
- 식사를 준비하거나 설거지할 때, 손을 씻거나 칫솔질할 때에도 반드시 안전한 물, 소독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개인 또는 공동우물의 경우에도 당분간 사용하지 마세요.
- 침수로 인해서 오염된 물이 닿았던 음식은 절대 먹지 말고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 캔에 담긴 음식의 경우, 캔이 열렸거나 손상이 되었거나 부풀어 올라있으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 물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음식의 경우에도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 모양 등의 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폐기해야 합니다.
 - 침수되지는 않았지만 단전된 냉장고에 들어 있던 음식물, 고기, 생선, 계란, 채소 등에 대해서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 냉장고의 경우, 단전된 지 2시간 이내에는 안전하지만 2시간이 넘어서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단전 기간 중 최대한 냉장고 문을 열지 않도록 하고, 냉동고의 경우에는 24시간까지는 괜찮다고 하나 그 이상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오염된 물에 피부 상처가 바로 노출되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상처가 붉어지거나 부으면 바로 의사선생님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피부 상처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긴 옷을 입고 방수장갑이나 장화목에는 테이프를 둘러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 침수 후, 물이 불어난 곳은 모기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고인물을 제거하고, 해충기피제를 바르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인천·경기·강원 북부지역의 경우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며, 최근에는 일본뇌염도 주의해야 합니다.
- 식사가 끝나면 바로 설거지를 합니다.
 - 쥐와 같은 설치류들이 남아 있는 식품에 접근하면서 사람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올바른 손씻기입니다.
 - 조리를 하거나 식사하기 전에, 화장실 사용 후에, 청소작업 후, 오염된 물건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합니다.

Q 02 장마 후 피서지에서 위생상 주의하여야 할 점은?

- A**
- 장마가 오고 난 후 피서지에서도 식품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 피서지가 직·간접적으로 장마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지 않은 경우라도 하절기 외지에서는 항상 청결하게 조리되고 안전하게 준비된 물과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 피부에 난 상처부위가 바닷물과 닿을 경우,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닷물과 접촉하지 마십시오.
 - 야외에서는 모기의 활동이 왕성하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해질녘부터 새벽까지(밤 10시부터 새벽 4시) 야간에 야외(낚시터, 야외캠핑 등) 활동은 자제하세요.

Q 03 장마 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A**
- 첫째, 올바른 손씻기를 생활화하세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으세요.
 - 철저한 손씻기로 각종 수인성 감염병과 유행성 눈병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식품은 안전하게 조리하세요.
 -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하며 조리한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습니다. 채소류 등은 깨끗한 물에 씻어서 먹거나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 도마, 칼 등은 식품별로 구분하여 따로 사용하며, 사용 후 깨끗이 씻고, 잘 말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 설사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의 조리를 금하고 특히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나 병원, 의원에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셋째,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합니다.
 -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해충기피제를 사용하거나 모기 활동이 왕성한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외출을 자제하세요.
 - 집주변에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고인 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넷째, 발열, 설사가 있거나 피부가 부어오르는 등 몸이 이상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 다섯째, 복구 작업 시에도 장갑, 장화 등을 반드시 착용하세요.
또한 복구 작업 중에도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중요합니다.

Q 04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란 무엇인가요?

- A** ●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원충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장관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Q 05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 A**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주로 오염된 물과 음식을 섭취하여 감염됩니다.
- 환자, 무증상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 또는 환자가 직접 조리한 음식에 의해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파리와 같은 위생곤충에 의해 오염물로부터 다른 음식물로 세균이 전파되기도 합니다.
 - 특히, 제2급감염병인 장티푸스의 경우 무증상보균자가 부주의하게 다른 음식에 의해 옮겨질 수도 있으며, 세균성이질의 경우 매우 적은 양의 세균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환자나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Part VII

부록

1. 풍수해 감염병 발생 현황
2. 풍수해 관련 감염병 정보
3. 풍수해 감염병 발생 대비 예방관리 점검사항
4. 풍수해 발생 후 조치사항(서식)
5. 풍수해 발생 후 감염병발생관련 일일보고(서식)
6. 안전한 물 사용하기
7. 안전한 음식 먹기
8. 올바른 손씻기 방법
9. 풍수해 주요 감염병별 예방수칙

Part VII

부록

1 풍수해 감염병 발생 현황 * 2021년 자료는 잠정통계로 변동가능

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 (대상)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E형간염, 비브리오패혈증
- 2021년 총 7,402명 신고

〈연도별 최근 5년간 2급·3급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현황〉

(단위: 신고수)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4,921	3,058	18,087	4,638	7,402
콜레라	5	2	1	—	—
장티푸스	128	213	94	39	61
파라티푸스	73	47	55	58	29
세균성이질	112	191	151	29	1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38	121	146	270	165
A형간염	4,419	2,437	17,598	3,989	6,583
E형간염	—	—	—	191	494
비브리오패혈증	46	47	42	70	52

나. 모기매개감염병

- (대상) 말라리아, 일본뇌염
- 금년 누계(1.1.~12.31.) 발생건은 총 317명 발생(말라리아 294명, 일본뇌염 23명)

다. 상처 난 피부를 통해 감염되는 렙토스피라증, 파상풍

- 금년 누계(1.1.~12.31.) 발생건은 총 135명 발생(렙토스피라증 114명, 파상풍 21명)

라. 보완적 감시 대상 감염병

- (대상) 안과감염병(유행성각결막염)*
- 유행정점은 39주(9.19~9.25)로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당 6.9명이며, 연 평균 4.2명임

* 안과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 89개 기관 자료

2 풍수해 관련 감염병 정보

1 콜레라

구 분	내 용
전파경로	□ 오염된 물(지하수 및 음용수 등)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 □ 드물게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대변이나 구토물과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
잠 복 기	□ 수시간~5일(보통 2~3일)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 처음에는 복통 및 발열이 없이 수양성 설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며 구토를 동반 □ 심한 탈수 등으로 저혈량성 쇼크 등 □ 무증상 감염이 많으며, 5~10% 정도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음
예 방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안전한 음식 섭취: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 위생적인 조리하기 □ 예방접종 - 콜레라 유행 또는 발생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백신 접종을 권고함 - 경구용 사백신(기초접종 2회, 추가접종) * 일부 국가에서 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 요구(필요시 전국 13개 국립검역소 및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가능)

2 장티푸스

구 분	내 용
전파경로	□ 주로 환자나 보균자의 대변이나 소변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에 의해 전파됨
잠 복 기	□ 3일~60일(평균 8~14일)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 고열이 지속되면서 오한, 두통, 복통, 설사나 변비, 상대적 서맥, 피부발진(장미진), 간·비장종대 등이 나타남 □ 치료하지 않을 경우 4주 내지 8주 동안 발열이 지속될 수 있음 □ 3~4주 후 위·장출혈 및 천공과 같은 합병증 발생 가능 □ 2~5%는 대·소변으로 균을 배출하는 만성보균자가 됨
예 방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안전한 음식 섭취: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 위생적인 조리하기

3] 파라티푸스

구 분	내 용
전파경로	□ 주로 환자나 보균자의 대변이나 소변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에 의해 전파됨
잠 복 기	□ 1일~10일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 발열이 지속되면서 오한, 두통, 복통, 설사나 변비, 상대적 서맥 등 장티푸스와 증상이 비슷하나 경미함 □ 2~5%는 대·소변으로 균을 배출하는 만성보균자가 됨
예 방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안전한 음식 섭취: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 위생적인 조리하기

4] 세균성이질

구 분	내 용
전파경로	□ 오염된 식수와 식품매개로 주로 전파됨 □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와 직접·간접적인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
잠 복 기	□ 12시간~7일(평균 1~4일)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 고열, 구역질,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혈변, 점액변), 잔변감 등이 □ 경증의 경우, 증상은 4~7일 후 저절로 호전되며 무증상 감염도 가능 □ S. dysenteriae가 가장 심한 증상을 보이고, S. flexneri, S. sonnei로 갈수록 임상 증상이 약해짐
예 방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안전한 음식 섭취: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 위생적인 조리하기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구 분	내 용
전파경로	□ 식수, 식품을 매개로 전파 □ 적은 양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사람-사람간 전파도 중요
잠 복 기	□ 2~10일(평균 3~4일)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 발열, 오심, 구토, 심한 경련성 복통 □ 설사는 경증, 수양성 설사에서 혈성 설사까지 다양한 양상 □ 증상은 5~7일간 지속된 후 저절로 호전 □ 합병증으로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증 또는 혈전성 혈소판감소증 지반, 급성신부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 발생하기도 하며, 특히 10세 미만 소아에서 흔함
예 방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안전한 음식 섭취: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 위생적인 조리하기

6 A형간염

구 분	내 용
전파경로	□ '분변-경구' 경로로 직접 전파 □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를 통한 간접 전파 □ 주사기를 통한 감염(습관성 약물 중독자)나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 □ 성접촉을 통한 감염
잠 복 기	□ 15~50일(평균28일)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 발열, 식욕감퇴, 구역 및 구토, 암갈색 소변, 권태감, 식욕부진, 복부 불쾌감, 황달 등 □ 수주~수개월 후 대부분 회복하나 드물게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음 □ 만성 간염은 없으나, 감염 환자의 15%는 A형간염이 1년까지 지속 또는 재발할 수 있음
예 방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안전한 음식 섭취: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 위생적인 조리하기 □ 예방접종 - 대상: 12~23개월의 모든 소아, A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이나 성인, 환자의 밀접접촉자, 고위험군에 대해 접종 - 6~12개월 간격으로 2회 근육 주사

7 비브리오패혈증

구 분	내 용
전파경로	□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감염 □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
잠 복 기	□ 12~72시간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1/3은 저혈압이 동반 □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생기고, 주로 하지에 발생 - 피부병변은 발진,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과사성 병변으로 진행
예 방	□ 일반적 예방 - 어패류 충분히 익혀 먹기(특히, 고위험군 환자) -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피하고, 바닷물에 접촉 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 씻기

8 파상풍

구 분	내 용
전파경로	□ 흙, 먼지, 동물의 대변 등에 포함된 파상풍의 포자가 피부의 상처를 통해 침투하여 전파됨
잠 복 기	□ 3~21일(평균 8일)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 전신파상풍 - 가장 흔한 형태 - 입주위 근육의 수축으로 인한 개구불능(trismus)이 가장 먼저 나타나며 경직에 따른 통증을 동반함 - 복부강직, 후궁반장(opisthotonus) 및 호흡근육 경직에 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남 - 강직은 3~4주 유지되며 완전히 회복되는 데에는 수 개월이 소요됨 □ 국소파상풍: 아포가 접종된 부위의 국소 긴장을 유발하여, 일반적으로 증상이 경하며 자발적으로 소실되기도 하나 전신파상풍의 전구증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함 □ 두부형파상풍: 매우 드물며, 중추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안면신경, 외안근 등)의 마비가 나타남 □ 신생아파상풍: 출생 시 소독하지 않은 기구로 탯줄을 자르는 등의 제대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생후 3~14일부터 증상이 발현되고, 초기에는 무력감만 보이나 이후 다양한 정도의 경련증상이 발생

구 분		내 용					
예 방	방	□ 소아 및 성인 예방접종					
		□ 상처 발생 시 파상풍예방: 예방접종 완료여부와 상처의 오염정도에 따라 결정함					
		과거 파상풍 접종횟수		깨끗하고 작은 상처		기타 다른 상처 ^{가)}	
				TT 또는 Td ^{나)}	TIG ^{다)}	TT 또는 Td ^{나)}	TIG ^{다)}
		미상 또는 3회 미만		접종 필요	접종 불필요	접종 필요	접종 필요
		3회 이상		접종 불필요 ^{라)}	접종 불필요	접종 불필요 ^{마)}	접종불필요
		* TT: 파상풍 단독 백신, Td: 성인형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신, TIG: 파상풍 인간면역글로불린 가) 토양, 분변, 오물, 타액 등에 오염된 상처 및 천자, 화상, 동상, 총상 등에 의한 상처가 포함 나) 7세 이상의 경우에는 TT 또는 Td(파상풍 단독 백신보다는 Td를 우선적으로 사용. 단, Tdap을 맞지 않은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Td 보다 Tdap을 추천함), 6세까지의 소아는 DTaP를 접종 다) TIG가 없을 경우에는 TAT(tetanus anti-toxin) 사용가능 라) 마지막 접종 후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면 Td를 1회 접종 마) 마지막 접종 후 5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면 Td를 1회 접종, 단 필요한 추가접종은 이상반응 발생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요함					

9) 말라리아

구 분	내 용
전파경로	□ 얼룩날개모기 속(genus Anopheles)의 암컷 모기가 인체를 흡혈하는 과정에서 전파 □ 드물게 수혈이나 주사기 공동사용에 의해 전파 □ 사람 간 직접 전파는 발생하지 않음
잠 복 기	□ 삼일열말라리아: 단기잠복기(7~20일), 장기잠복기(6~12개월) □ 열대열말라리아: 9~14일, 사일열말라리아: 18~40일, 난형열말라리아: 12~18일, 원숭이열말라리아: 11~12일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 주요 증상은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남 □ 중증인 경우(주로 열대열말라리아) 황달, 혈액응고장애, 신부전, 간부전, 쇼크, 의식 장애나 섬망, 혼수 등의 급성뇌증이 나타남 □ 신속한 치료가 예후에 결정적이므로 조기 진단이 중요
예 방	□ 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여 감염원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 □ 모기가 주로 활동하는 해질녘부터 새벽까지 야간 활동 자체 □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옷과 긴 바지 착용 □ 상처나 얼굴 주변을 피해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기피제 사용 □ 실내로 모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충망에 틈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

10 렙토스피라증

구 분	내 용
전파경로	□ 주로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물, 토양, 음식물에 노출시 상처난 부위를 통해 전파 – 감염된 동물의 소변 등과 직접 접촉, 또는 오염된 음식을 먹거나 비말 흡입 가능 □ 병원소: 설치류와 소, 돼지, 개 등의 일부 가축
잠 복 기	□ 2~30일(평균 5~14일)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 가벼운 감기증상부터 치명적인 웨일씨병까지 다양, 2상성을 보임 – 90% 경증의 비황달형, 5~10% 웨일씨병(중증의 황달, 신부전, 출혈) – 제1기(패혈증기) : 렙토스피라균이 혈액, 뇌척수액 및 대부분의 조직에서 검출되고 갑작스러운 발열, 오한, 결막부종,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등의 독감 유사증상이 4일~7일간 지속, 폐침범이 흔하며, 기침, 흉통이 주증상이며, 일부에서 객혈 동반됨 – 제2기(면역기) : 1~2일의 열소실기를 거쳐 제2기로 들어가는데 제2기는 IgM 항체의 생성과 함께 혈액, 뇌척수액 등에서 렙토스피라균은 사라지고 뇌막지극증상, 발진, 포도막염, 근육통 등을 보임, 15~80%가 무균성 수막염 증상을 보임 □ 합병증: 간부전, 신부전, 급성호흡부전, 중증 출혈 등으로 사망 □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치명률은 5~15%에 이름
예 방	□ 오염이 의심되는 물에서 수영이나 그 외의 작업을 피하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작업을 할 때는 피부 보호를 위한 작업복, 장화 착용 □ 추수, 들쥐 포획사업, 홍수 등 단시간 렙토스피라균에 오염된 물에 노출되었을 경우, 수일 후 부터 발열 시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함

11 유행성각결막염

구 분	내 용
전파경로	□ 직접 접촉 : 눈 분비물 등과 접촉 □ 간접 접촉 : 수건, 침구물, 세면기구 등 개인용품과 접촉 □ 수영장 등 물을 통한 전파
잠 복 기	□ 5~14일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 양안의 출혈과 안검 부종, 안통, 눈물, 눈곱, 눈의 이물감, 눈부심, 눈꺼풀 부종, 결막 여포, 이개전립프절병증 □ 각막 상피하 점상 혼탁
예 방	〈 일반 〉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기 □ 수건이나 베개,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기

구 분	내 용
	〈 환자 〉 □ 환자는 외출 자제 －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수영장에 가지 않기 □ 눈병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기 □ 사용한 수건 등은 반드시 뜨거운 물과 세제에 세탁하기

12 급성 출혈성 결막염

구 분	내 용
전파경로	□ 직접 접촉 : 눈 분비물 등과 접촉 □ 간접 접촉 : 수건, 침구물, 세면기구 등 개인용품과 접촉 □ 수영장 등 물을 통한 전파
잠 복 기	□ 엔테로바이러스 70형: 24시간 □ 콕사키바이러스 A24 Variant형: 48~72시간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 갑작스런 안통, 이물감, 안검 부종, 충혈, 결막하 출혈
예 방	〈 일반 〉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기 □ 수건이나 베개,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기 〈 환자 〉 □ 환자는 외출 자제 －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수영장에 가지 않기 □ 눈병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기 □ 사용한 수건 등은 반드시 뜨거운 물과 세제에 세탁하기

13 인플루엔자

구 분	내 용
전파경로	□ 환자의 비말에 의해 주로 전파
잠 복 기	□ 1~4일(평균 2일)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 전신증상 및 호흡기 증상이 갑자기 시작됨 – 발열(고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 – 인후통, 콧물, 코막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 □ 주로 소아에서는 구토, 오심, 설사 등의 호흡기 증상 □ 흉통, 안구통, 복통, 경련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함
예 방	〈 일반 〉 □ 예방접종 –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매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 권고(10~12월)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기침예절 실천(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마스크 착용) –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 환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 시설 등에 대한 청소 및 소독 〈 환자 〉 □ 증상 발생 후 감염력이 소실(해열 후 24시간 경과)될 때까지 등교,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기 (미 호전 시 의료진 진료) □ 사람이 많은 다중시설에 가지 않고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 65세 이상 고령자, 영유아,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 피하기 □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3 풍수해 감염병 발생 대비 예방관리 점검사항

연번	점검사항	이상유무	조치사항
1	방역 및 소독약품의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풍수해 발생 시 관할 시군구로 배포할 양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는가?		
2	보건기관, 감염병담당자 등 비상연락망이 현행화 되어 있는가?		
3	관할 지역의 비상방역체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가?		
4	관할 지역의 질병정보모니터망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5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안과감염병 등 수해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있는가?		
6	풍수해 발생에 따른 집단환자 발생 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7	풍수해 발생 시 안전한 물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8	지역사회에 풍수해 발생 시 감염병 예방수칙에 대한 숙지와 홍보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9	풍수해 발생 시 감염병 대응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I

II

III

IV

V

VI

VII

4 풍수해 발생 후 조치사항(서식)

기관명	조치계획		조치한 사항		담당자	연락처
	일시	주요내용	일시	주요내용		
		○ ○ — *		○ ○ — *		

5 풍수해 발생 후 감염병 발생 관련 일일보고(서식)

1) 기관정보

- 기관명:
- 보고자:
- 보고일:
- 풍수해 발생지역:

2) 환자발생현황: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장관감염 집단 발생, 유행성각결막염 등

3) 검체수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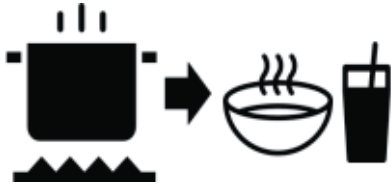
일련 번호	병원명	채취일	수거일	환자인적사항				비고
				성명	나이	주소	연락처	

4) 예보 등 홍보현황

주요내용	예보 등 홍보방법	마스크	반사회	홍보물배포	기타

6 안전한 물 사용하기

풍수해가 발생하면 물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원균과 화학물질이 물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85°C에서 1분 이상 끓인 다음에 식혀서 사용합니다.



단, 화학물질이 유출되었다면 끓인 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 물이 안전하다는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생수를 마시도록 합니다(양치 포함).



수유는 가루분유보다는 모유수유를 하거나, 액상분유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아래의 사항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합니다.

- ① 안전하지 않다면 절대로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 ② 안전하지 않은 물로 식기, 장난감 또는 기타 물건을 씻거나 청소하지 마십시오.
- ③ 안전하지 않은 물로 샤워 또는 목욕을 하지 마십시오.
- ④ 안전하지 않은 물로 요리하지 마십시오.
- ⑤ 안전하지 않은 물로 양치하지 마십시오.
- ⑥ 안전하지 않은 물을 사용해서 얼음을 만들지 마십시오.

※ 자료원: 미국 CDC

I

II

III

IV

V

VI

VII

7 안전한 음식 먹기



※ 냉장고의 전원이 4시간이상 꺼진 이후, 상하기 쉬운 음식 (고기, 생선, 우유, 달걀, 남은 음식 등)을 버리세요

1) 버려야 할 음식

- ① 냄새나거나, 변질된 음식
- ② 캔 또는 음식 용기가 부풀어 오르거나, 개봉된 음식
- ③ 방수 용기 또는 캔에 들어있지 않은 식품
- ④ 집에서 통조림한 음식
- ⑤ 마분지 용기에 담긴 식품(주스, 우유, 등)
- ⑥ 스크루 캡, 스냅 뚜껑, 트위스트 캡으로 되어 있는 용기 내 식품

아래와 같은 물품도 버려주세요.

- ① 나무 도마
- ② 젓병과 고무젓꼭지

※ 쓰레기통 뚜껑은 닫아두도록 합니다.

조리도구 등은 다음과 같이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 ① 세척하기 전에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고무장갑, 장화, 고글(필요시)을 착용합니다.
- ② 개봉하지 않은 통조림은 겉면을 세제를 이용해 닦은 다음 염소계 소독제 1%에 담구었다가 사용합니다.
* 만드는 법 : 빈생수통 500ml에 125g의 염소소독제(500ml병의 1/4정도)를 붓고 나머지는 안전한 물을 부어 사용
- ③ 식탁과 테이블은 세제를 이용해 표면을 문질러 닦고, 안전한 물로 씻어낸 다음 염소계소독제 0.1%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닦고 햇빛에 말립니다.

* 만드는 법 : 빈생수통 500ml에 0.5mg의 염소소독제(종이컵 1/5정도)를 붓고 나머지는 안전한 물을 부어 사용

- ④ 염소계 소독제에 암모니아나 다른 세정제와 섞지 않도록 합니다.
- ⑤ 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창문과 문을 열어 바깥 공기가 통하게 합니다.

※ 출처 : 미국 CDC

8 올바른 손씻기 방법

- 올바른 손 씻기 효과 VS 올바르지 않은 손 씻기 영향



- 올바른 손씻기 6단계



• 올바른 손씻기 방법

- 흐르는 물에서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씻기를 하도록 합니다.
- 만약 물과 비누가 없는 경우에는 알코올 62% 이상이 포함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자주 닦도록 합니다.



또는



• 손씻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 ① 음식조리 전
- ② 음식을 먹기 전
- ③ 아픈 사람을 간호하기 전, 후
- ④ 상처를 만지기 전, 후
- ⑤ 화장실 이용 전, 후
- ⑥ 코를 풀었거나, 기침을 한 후

- ⑦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한 경우
 - 기저귀 교체 전, 후
 - 익히지 않은 식재료를 만진 경우
 - 쓰레기 버린 후
 - 홍수로 범람된 물을 만진 경우

소관 부서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		
연락처	TEL.	(043)719-9082
	FAX.	(043)719-9098~9099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풍수해
「(대풍·호우, 대설)」
감염병 대응
매뉴얼

- 2022년판 -



질병관리청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TEL, 043-719-9082 FAX, 043-719-9098~9099

비매품/무료

95510



9 791168 601901
ISBN 979-11-6860-190-1 (PDF)